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470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2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검토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기금 현황

-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개별 법률과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에 근거하여 전입금·기부금·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이 '24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23년도(6개 기금) 대비 △1개 감소한 5개 기금으로,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서울특

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제출한 것임

〈표 2-1〉 기금현황 (5개 기금)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기금운용 개시연도	존속기한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소 관 부 서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 예방 기금	2007	기한없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함	안전총괄담당관 (기금관리운용: 학교안전공제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교육 재정 안정화 기금	2022	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2021	2026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의 내실있는 추진	초등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시설 환경 개선 기금	2021	기한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 자원 연차적 적립·조성	교육시설안전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2016	2025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필요 자원 연차적 적립·조성	청사이전추진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23.11. 1)

(2) 기금조성규모

□ 5개 기금의 '24년도말 조성액은 1조 5,860억 8,100만원으로 계획된 바, '23년도말 조성액(1조 9,993억 5,700만원)보다 △20.7%, △4,132억 7,6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2-2〉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3년도말 조성액 ^{주1)}	'24년도 기금운용계획 ^{주2)}		'24년도말 조성액	증감액	증감률
	(A)	수입	지출	(B)	(C=B-A)	(D=C/A)
합계	1,999,357	81,802	495,079	1,586,081	△413,276	△20.7
서울특별시학교 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3,310	14,007	16,011	1,307	△2,003	△60.5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665,653	34,404	330,000	370,057	△295,595	△44.4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 전환 교육 기금	434	16	-	450	16	3.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36,491	31,420	107,268	1,160,643	△75,847	△6.1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93,468	1,953	41,799	53,622	△39,846	△42.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23.11. 1)

주1) '23년도말 조성액(A) : '23년도말 기금결산액 추정치

주2)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예치금회수'와 '예치금' 금액은 제외

(3) 기금운용계획

- 5개 기금의 '24년도 운용계획은 총 2조 811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 계획(2조 1,554억 3,400만원)보다 △3.4%, △742억 7,300만원 감소함
- 기금 운용규모 상위 순으로 나열하면, 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②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③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④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⑤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순으로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금년도(1조 3,426억 1,200만원)보다 △5.6%, △747억원 감소한 1조 2,679억 1,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금년도(6,656억 5,300만원)보다 5.2%, 344억 400만원 증가한 7,000억 5,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금년도(1,312억 2,400만원)보다 △27.3%, 358억 200만원 감소한 954억 2,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금년도(155억 1,000만원)보다 11.7%, 18억 700만원 증가한 173억 1,8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금년도(4억 3,400만원)보다 3.7%, 1,600만원 증가한 4억 5,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2-3〉 기금운용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2024(안)	2023	증 감 액	증 감 륜
합 계	2,081,160	2,155,434	△74,273	△3.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67,911	1,342,612	△74,700	△5.6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700,057	665,653	34,404	5.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95,422	131,224	△35,802	△27.3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7,318	15,510	1,807	11.7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450	434	16	3.7

(4) 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개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교육청이 '24년도에 운용할 5개 기금은 모두 존속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존속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4~20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는 존속기간을 경과하여 2028년까지 기금수입을 전망하고 있어,

-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2024년 12월 31일)이후에도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검토

-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기금별 운용방향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2024~20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는 기금별 운용방향 및 기금정비계획을 포함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나,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제외한 4개 기금에 대한 운용방향을 작성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의 경우 '24년 기금수입을 0원으로 전망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 별도의 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이나,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법」 제52조에 따라 설치되고, 교육감이 해당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책임자이므로 「지방기금법」 제2조에 따른 기금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 기금 운영 방향중 특정기금(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제외하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삭제하고, '23년도중 동 기금을 정비(폐지)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과 관련 쟁송(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시간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교육부의 “중기지방교육재정 수립 지침”은 최근 수년간의 추이 및 기금 관련 조례 요건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며, 전년도말 조성액을 반드시 포함하여 당해연도 기금 수입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24년도 기금 수입 전망 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을 포함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해당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4〉 중기 기금수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합 계	2,071,494	1,690,565	1,125,523	1,190,131	989,163	△16.9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설 기금	95,422	56,720	0	0	0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76,014	1,196,306	838,276	709,195	308,151	△29.9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700,058	437,539	287,247	480,936	681,012	△0.7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0	0	0	0	0	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2028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23.11), p.28

〈표 2-5〉 중기 기금정비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연평균 증가율	정비 유형	기 금 존속기한 ^{주1)}
	2024	2025	2026	2027	2028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주2)}	95,423	56,720	0	0	0	△100.0	유지	2025.12.31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0	0	0	0	0	0.0	폐지	2026. 7.2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2028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23.11), p.47

주1) 기금 설치조례에 규정된 기금 존속기한을 의미함

주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필요재원 연차적 적립·조성을 위하여 유지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검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계획안에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교육청은 5개 기금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제외한 3개 기금(**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에 대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은 성인지 예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는 바, '24년도에는 2개 사업, 529억 1,800만원을 계획한 것으로 검토됨

〈표 2-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개수	2024년 계획액 (A)	2023년 계획액 (B)	증감액 (C = A - B)	증감률 (C / B)
합계	2	52,918	22,585	30,333	134.3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	-	-	-	-
성별영향 평가사업	-	-	-	-	-
교육부 지정사업 ^{주1)}	-	-	-	-	-
자체선정사업	2	52,918	22,585	30,333	134.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23.11), p.26, 39, 재구성

주1)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교육부 지정사업에 해당되나, 해당 세부사업(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23~'24년 운용계획 및 실적 없음

2. 기금별 검토

(1)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 조성규모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이라 함) 제52조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설치한 기금(이하 ‘공제기금’ 이라 함)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가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기금임
- 동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인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기금이나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타 시도교육청의 법령해석 의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의 기금에 해당되어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임
- 동 기금의 '24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3억 700만원으로 계획하여 제출된 바, '23년도말 조성액(33억 1,000만원) 대비 △60.5%, △20억 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2-7〉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23년도 말 조성액 (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 말 조성액 (d=a+b-c)	증감 (e=d-a)	증감률 (e/a)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3,310	14,007	16,011	1,307	△2,003	△60.5%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4년도 **운용계획**은 173억 1,800만원으로 '23년도(155억 1,000만원)보다 11.7%, 18억 700만원 증액하여 운용계획한 바,
- 수입계획은 ①'23년도말 기금조성액을 재원으로 하는 **예치금회수** 33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②학교안전공제회 학생치료비(요양급여) 부족분에 대한 **기타지원금** 51억원 ③공제료, 소방사업 수익 등 **기타수입** 87억 6,000만원과 ④**이자수입** 1억 4,600만원으로 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2-8〉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항 목	세 부 내 역	2 0 2 4 년 도		2023년도 (B)	증 감	
		(A)	구성비		금 액 (C=A-B)	비 율 (C / B)
합	계	17,318	100.0	15,510	1,808	11.7
①예치금회수	전 기 이 월 금	3,310	19.1	7,311	△4,001	△54.7
②기타지원금	학교안전공제회기금지원금	5,100	29.4	-	5,100	순증
③ 기타수입	소 계	8,760	50.6	8,028	732	9.1
	공 제 료	8,247	47.6	7,392	855	11.6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16	0.1	15	1	6.7
	소 방 사 업 수 익	200	1.2	500	△300	△60.0
	학 교 폭 력 피 해 구 상 금	275	1.6	101	173	171.3
	법 인 세 환 급 금	20	0.1	18	2	11.1
	잡 수 입	1	0.0	-	1	-
④ 이자수입	예 금 이 자	146	0.8	170	△23	△13.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23.11. 1)

- **기타지원금**은 '24년도에 순증한 수입항목으로, 공제기금 고갈에 따른 학생 치료비(요양급여) 부족분을 「학교안전법」 제3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보조하는 것으로 기금소관부서인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서울시교육청의 '24년도 예산안중 동일 규모인 5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공제회 입장에서는 공제료 인상이 용이하지 않고, 의료비 또한 상승되어 공제기금에 대해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바, 기금 조성 및 운용 취지를 고려하면 기금 부족액에 대해 보조금으로 일시 충당하기 보다는 공제료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교육부와 협의하고, 수익사업을 증대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기금고갈 해소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학교안전공제료**는 「학교안전법」 제12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의 의무가입자인 학교장이 납부하여 발생하는 수입인 바,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제49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학교안전사고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24년도 공제료 단가를 결정하나,
 - '24년도 동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까지 교육부의 공제료 산정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23년 11월, 교육부의 공제료 산정기준이 고시된 후, '24년도 공제료를 확정('23.11. 6)한 것으로 확인됨
 - '24년도 학생 1인당 공제료는 교육부 고시금액보다 평균 10.0%, 893원 인상된 9,818원으로 금년도 공제료 단가(8,323원) 보다 18.0%, 1,495원 높게 산정된 바, 공제급여 수요의 지속적 증가, 의료비 인상에 따른 공제급여 지출증가 등이 예상되어 교육부 공제료 기준 대비 10.0%를 인상하여 공제료를 산정한 것으로 검토됨

〈표 2-9〉 2024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

구 분		유	초	중	고	평균단가
2024년도	공제회계획(A)	3,960	5,170	12,430	17,710	9,818
	교육부고시(B)	3,600	4,700	11,300	16,100	8,925
2023년도	공제회단가(C)	3,200	5,350	10,300	14,440	8,323
교육부 고시 대비 증감률 [D=(A-B)/B]		10.0	10.0	10.0	10.0	10.0
전년도 대비 공제료 증감률 [E=(A-C)/C]		23.8	△3.4	20.7	22.6	18.0

- **소방사업수익**은 「학교안전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공제회가 운영하는 소방안전점검사업에 대한 '24년도 예상 수익금을 반영한 것으로, '23년도(5억원) 보다 △60.0%, △3억원 감소된 2억원으로 계획한 바,
 - 소방사업 가입 학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인력 배치기준이 강화되어 '24년도 가입학교수 감소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23년도(73억 1,100만원) 대비 △54.7%, △40억원 감소된 33억 1,0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23년도(1억 7,000만원) 대비 △13.6%, 2,300만원 감소된 1억 4,600만원을 계획함
- 지출계획은 '23년도(155억 1,000만원)보다 18억 700만원 증액된 173억 1,800만원으로, 정책사업 기준 ①**학교안전망구축**(141억 8,400만원), ②**재무활동**(13억 700만원), ③**기관운영**(2억 6,900만원), ④**인건비**(15억 5,700만원)로 지출계획 한 바,

- 우리 위원회가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부터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기금회계의 사업내역에 맞추어 적절한 '분야·부문' 및 '정책·단위·세부사업'에 반영하도록 개선요구 한 사례가 있어,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0〉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2024년도		2023년도 (B)	증감	
				(A)	구성비		금액 (C=A-B)	비율 (C / B)
합 계				17,318	100.0	15,510	1,807	11.7
①	학교안전망구축			14,184	81.9	10,401	3,783	36.4
	학교안전망구축			14,184	81.9	10,401	3,783	36.4
	공제사업			13,439	77.6	9,640	3,798	39.4
		공제급여지급		13,056	75.4	9,160	3,896	42.5
		전문가위탁		34	0.2	40	△6	△14.8
		보상심사위원회		16	0.1	16	-	-
		소송업무수행		226	1.3	214	12	5.6
		비용의보전		25	0.1	25	-	0.0
		시스템운영개선및안정화		19	0.1	123	△104	△84.4
		중앙회분담금		60	0.3	60	-	0
	예방사업			189	1.1	386	△197	△50.9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30	0.2	26	3	11.9
	학교폭력피해지원			525	3.0	347	178	51.4
②	재무활동			1,307	7.5	3,310	△2,003	△60.5
	예치금			1,307	7.5	3,310	△2,003	△60.5
		보유준비금		411	2.4	2,156	△1,745	△80.9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예치금		53	0.3	81	△28	△34.6
		학교폭력피해지원금예치금		841	4.9	1,073	△231	△21.5
③	기관운영			269	1.6	272	△4	△1.3
	기관운영비			269	1.6	272	△4	△1.3
		업무추진비		23	0.1	23	-	-
		운영비		245	1.4	249	△4	△1.5
④	인건비			1,557	9.0	1,525	31	2.1
	근로자인건비			1,557	9.0	1,525	31	2.1
		보수		1,221	7.1	1,204	17	1.4
		수당		229	1.3	220	9	4.0
		4대보험		106	0.6	100	6	5.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23.11. 1)

(2)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 조성규모

- 동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임
-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안정화 계정’만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제출한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24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23년도말 조성액(6,656억 5,300만원)보다 △44.4%, △2,955억 9,500만원 감소한 3,700억 5,700만원임

〈표 2-11〉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23년도 말 조성액 (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 말 조성액 (d=a+b-c)	증 감 (e=d-a)	증감률 (e/a)
	수입 계획 (b)	지출 계획 (c)			
665,653	34,404	330,000	370,057	△295,595	△44.4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4년도 운용계획은 7,000억 5,700만원으로 '23년도(6,656억 5,300만원)보다 5.2%, 3,440억 400만원 증액하여 운용계획한 것으로,

○ '24년도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6,656억 5,300만원을 계획하고, **이자수입**은 344억 4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회수될 시점 기준으로 예상되는 예금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이며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23년도 하반기 세입결손에 이어 '24년도에도 지방교육재정 감소가 예상되어 수입액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2-12〉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수입과목				'24년 수입액	'23년 수입액 ^{주1)}	증 감
장	관	항	목	(A)	(B)	(A-B)
합 계				700,057	665,653	34,404
기	타			665,653	465,099	200,553
	예	치	금 회 수	665,653	465,099	200,553
		예	치 금 회 수	665,653	465,099	200,553
			예 치 금 회 수	665,653	465,099	200,553
자	체 수 입			34,404	553	33,851
	이	자 수 입		34,404	553	33,851
		이	자 수 입	34,404	553	33,851
			예 금 이 자 수 입	34,404	553	33,851
내	부 거 래			-	200,000	△200,000
	전	입 금		-	200,000	△200,000
		전	입 금	-	200,000	△20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200,000	△200,0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23.11. 1)

주1) 2023년도 수입액은 2차 변경계획안 기준 작성

○ 지출계획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중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00억원을 계획하여 제출한 것으로,

- 서울시교육청은 '22년도 동 기금 조성 후 '23년도까지는 별도의 계획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으나, '24년도에는 그간 적립한 기금(재정안정화계정)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지출계획을 수립한 것임

-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기금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 이내)을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에 따라 '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보전에 사용하고자, '23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6,665억 5,300만원)의 49.6%인 3,30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지출계획하고, '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도 기금전입금 3,300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용도를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나,
 - 동 규정만으로는 세입재원의 기준시점이 결산인지 예산인지 불명확한 바, 「서울특별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경우, 세입과목을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결산서상 세입재원으로 명시한 사례와 비교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소관 조례는 기준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교육부의 2022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토결과에도 동 조항의 수정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동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재무활동중 예치금**은 3,700억 5,700만원을 지출계획한 바, '24년도에 지출계획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외의 잔액을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 판단됨

〈표 2-13〉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24년 지출액 (A)	'23년 지출액 ^{주1)} (B)	증 감 (A-B)
합 계				700,057	665,653	34,404
재	무	활	동	700,057	665,653	34,404
	비		용 자 성 사 업 비 ^{주 2)}	330,000	-	33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0,000	-	33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0,000	-	330,000
	예		치 금	370,057	665,653	△295,595
		예 치 금		370,057	665,653	△295,595
		예 치 금		370,057	665,653	△295,59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23.11. 1)

주1) 2023년도 지출액은 2차 변경계획안 기준 작성

주2) 기금설치 관련 조례에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사업비

○ 아울러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 회기에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제출한 바, 이는 '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미리 단정하여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것이나,

- 「지방자치법」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어, 기금운용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금번 정례회중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로써,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3년도와 '22년도 서울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미전입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감소정하고자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지출계획(예치금)도 연동시켜 장부상의 허수를 정리하는 변경안이라는 특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난 임시회 종료('23. 9.15) 후인 '23년 9월 21일 교육부가 지방재정교부금 감액예상액을 통보함에 따라 금번 정례회 이전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데에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유사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교육부에 유사사례 발생시 조기통보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1) 조성규모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21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2년도부터 운용하는 기금임
- 동 기금은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운용계획이 삭제되고, 관련 조례도 폐지 예정으로, 지난 11월 1일 '24년도 생태전환교육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시켜 제출하지 않았으나,
 - 소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전년도말 조성액을 포함한 '24년도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시정요구하여, '23년 11월 15일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이 포함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실상 수정하여 제출하였음
 - 동 기금의 '24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23년도말 조성액(4억 3,400만원)보다 이자수입 1,600만원이 증가한 4억 5,000만원으로 전망하여 제출하였음

〈표 2-14〉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23년도 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 말 조성액	증 감	증감률
	수입 계획	지출 계획			
(a)	(b)	(c)	(d=a+b-c)	(e=d-a)	(e/a)
434	16	-	450	16	3.7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4년도 운용계획액은 4억 5,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말 조성액에 대한 **예치금회수**(4억 3,400만원)와 예상 **이자수입**(1,600만원)을 계획하고, **지출계획**은 수지균형에 따라 4억 5,000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2-15〉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수입과목				'24년 수입액	'23년 수입액 ^{주1)}	증 감
장	관	항	목	(A)	(B)	(A-B)
합 계				450	434	16
기				434	417	16
예치금회수				434	417	16
예치금회수				434	417	16
예치금회수				434	417	16
자체수입				16	16	-
이자수입				16	16	-
이자수입				16	16	-
예금이자수입				16	16	-

주1) 2023년도 수입액은 2023년도말 기준 예상 보유액임('23년 기금운용계획안 미수립)

〈표 2-16〉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24년 지출액	'23년 지출액 ^{주1)}	증 감
				(A)	(B)	(A-B)
합 계				450	434	16
재무활동				450	434	16
예치금				450	434	16
예치금				450	434	16
예치금				450	434	16

주1) 2023년도 지출액은 2023년도말 기준 예상 보유액임('23년 기금운용계획안 미수립)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 조성규모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조성하고자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은 ①그린 스마트미래학교, ②학교단위공간혁신, ③민간투자사업상환임

○ 동 기금은 '24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23년도말 조성액(1조 1,606억 4,300만원)보다 △6.1%, △758억 4,700만원 감소한 1조 2,364억 9,100만원으로 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2-1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23년도 말 조성액 (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 말 조성액 (d=a+b-c)	증 감 (e=d-a)	증감률 (e/a)
	수입 계획 (b)	지출 계획 (c)			
1,236,491	31,420	107,268	1,160,643	△75,847	△6.1%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4년도 운용계획은 1조 2,679억 1,100만원으로 '23년도(1조 3,426억 1,200만원)보다 △5.6%, △747억원 감액하여 운용계획한 바,

○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23년도(1조 723억 9,500만원)보다 1,640억 9,500만원 증가된 1조 2,364억 9,100만원을 계획하고, 이자수입은 '23년도(387억 1,600만원)보다 △72억 9,600만원 감액한 314억 2,000만원을 수입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2-1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수입과목				'24년 수입액	'23년 수입액 ^{주1)}	증	감
장	관	항	목	(A)	(B)	(A-B)	
합 계				1,267,911	1,342,612	△74,700	
기	타			1,236,491	1,072,395	164,095	
	예	치	금 회 수	1,236,491	1,072,395	164,095	
		예	치 금 회 수	1,236,491	1,072,395	164,095	
			예 치 금 회 수	1,236,491	1,072,395	164,095	
자	체 수 입			31,420	38,716	△7,296	
	이	자 수 입		31,420	38,716	△7,296	
		이	자 수 입	31,420	38,716	△7,296	
			이 자 수 입	31,420	38,716	△7,296	
내	부 거 래			-	231,500	△231,500	
	전	입 금		-	231,500	△231,500	
		전	입 금	-	231,500	△231,5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231,500	△231,500	

○ 지출계획은 '23년도(1조 3,426억 1,200만원)보다 △747억원 감액된 1조 2,679억 1,100만원으로 계획한 바,

-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은 '23년도(1조 3,426억 900만원)보다 △747억원이 감액된 1조 2,679억 8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민간투자사업상환과 예치금**으로 세부사업을 편성한 바,

- **민간투자사업상환**의 경우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정책사업인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에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세출 예산 사업별 분류에 따라, **재무활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어, '24년도에는 **재무활동**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민간투자사업상환**은 상환기간이 '07년부터 '32년까지인 141개교의 BTL 원금·이자·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해 '23년도에 신설한 사업으로 '23년도 지출계획액(1,061억 1,800만원) 대비 11억 4,600만원 증액된 1,072억 6,5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

- **재무활동중 예치금**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23년도 지출계획액(1조 2,364억 9,100만원) 대비 △758억 4,700만원 감액된 1조 1,606억 4,300만원을 지출계획 한 바,
 - 동 기금의 주요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학교단위공간혁신** 사업은 사전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의 설계 전 각종 절차로 인해 '24년도에는 예산집행 계획이 없어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치한 것으로 검토됨

- 정책사업인 **교육행정일반**은 기본경비로 '23년(240만원) 대비 6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지출계획 한 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24 지출액(A)	'23년 지출액(B)	증감(C=A-B)
합			계	1,267,911	1,342,612	△74,700
교육			행정 일 반	3	2	1
			기 관 운 영	3	2	1
			위 원 회 운 영	3	2	1
			위 원 회 수 당	3	2	1
재			무 활 동	1,267,908	1,342,609	△74,700
			지 방 채 상 환 및 리 스 료	107,265	106,118	1,146
			민 간 투 자 사 업 상 환	107,265	106,118	1,146
			B T L 원 금	63,435	62,974	461
			B T L 이 자	13,774	13,353	421
			B T L 운 영 비	30,055	29,790	265
			예 치 금	1,160,643	1,236,491	△75,847
			예 치 금	1,160,643	1,236,491	△75,847
			예 치 금	1,160,643	1,236,491	△75,847

(5)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1) 조성규모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지난 '16년도에 설치한 기금임

○ 신청사 건립 및 연수원 건립(청사이전추진단) 사업의 특성상 수개년도에 걸친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재원 투입이 필요함에 따라 재원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조성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음

〈표 2-20〉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C=A-B)
	계 (A)	교 특 회 계 전 입 금	이자수입	계 (B)	기관운영	기 지 타 출	
2016	5,927	5,908	18	-	-	-	5,927
2017	12,005	11,930	74	43	43	-	11,961
2018	28,368	27,957	410	967	967	-	27,401
2019	7,820	7,526	293	3,500	3,500	-	4,319
2020	14,004	13,252	752	3,677	3,677	-	10,327
2021	16,868	15,987	881	1,028	1,028	-	15,839
2022	42,816	41,015	1,801	3,424	3,424	-	30,391
2023	33,772	32,939	833	55,473	55,473	-	△21,700
2024	1,953	-	1,953	41,799	41,799	-	△39,846
합계	163,538	156,517	7,020	109,915	109,915	-	53,622

※ 연수원 건립 사업은 미집행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금운용계획(안)」 p.81 재구성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24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23년도말 조성액(934억 6,800만원)보다 △42.6%, △398억 4,600만원 감액된 536억 2,200만원으로 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2-21〉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23년도 말 조성액 (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 말 조성액 (d=a+b-c)	증 감 (e=d-a)	증감률 (e/a)
	수입 계획 (b)	지출 계획 (c)			
93,468	1,953	41,799	53,622	△39,846	△42.6%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4년도 운용계획은 954억 2,200만원으로 '23년도(1,312억 2,400만원)보다 △27.3%, △358억 200만원 감액하여 운용계획한 바,
- 수입계획은 954억 2,200만원으로 '23년도말 기금조성액을 재원으로 하는 예치금회수 934억 6,800만원, 이자수입 19억 5,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수입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2-2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수입과목				'24년 수입액 (A)	'23년 수입액 (B)	증 감 (A-B)
장	관	항	목			
합 계				95,422	131,224	△35,802
내 부 거 래				-	32,939	△32,939
	전	입 금		-	32,939	△32,939
		전	입 금	-	32,939	△32,939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32,939	△32,939
기 타				93,468	97,451	△3,983
	예	치 금 회 수		93,468	97,451	△3,983
		예	치 금 회 수	93,468	97,451	△3,983
			예 치 금 회 수	93,468	97,451	△3,983
자 체 수 입				1,953	833	1,119
	이	자 수 입		1,953	833	1,119
		이	자 수 입	1,953	833	1,119
			예 금 이 자 수 입	1,953	833	1,119

○ 지출계획의 경우에도 수지균형에 따라 954억 2,200만원을 계획한 바,

- 정책사업인 **기관운영중 신청사 건립** 사업은 '23년(377억 5,600만원) 대비 40억 4,300만원 증액한 417억 9,900만원(시설비 398억 6,100만원, 감리비 17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6,800만원)을 지출계획 하고,
- **재무활동(예치금)**은 '23년(934억 6,800만원) 대비 △398억 4,600만원을 감액한 536억 2,200만원으로 계상하여 제출한 것으로 관련 조례에 명시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출계획으로 사료됨

〈표 2-2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24년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감 (C=A-B)
합			계	95,422	131,224	△35,802
기			관 운영	41,799	37,756	4,043
			교육 행정 기관 시설	41,799	37,756	4,043
			기관 시설 유지 관리	41,799	37,756	4,043
			신청사 건립	41,799	37,756	4,043
			설계비	-	13	△13
			시설비	39,861	36,126	3,735
			감리비	1,770	1,471	299
			시설부대비	168	144	23
재			무 활동	53,622	93,468	△39,846
			예치금	53,622	93,468	△39,846
			예치금	53,622	93,468	△39,846
			예치금	53,622	93,468	△39,846

○ 동 기금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23년 7월 1일자로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소관 및 기금의 관리·이용부서가 **교육재정과(신청사건립)**와 **초등교육과(연수원건립)**에서 **청사이전추진단**으로 통합·변경된 것으로

- 신청사 건립은 총사업비 1,636억 3,600억원으로 신청사 이전이 '25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25년 12월)까지 신청사 건립을 완공할 예정으로 사료됨
- 관련 조례는 동 기금의 조성목적중 연수원 건립도 명시하고 있는 바, 연수원 건립은 '16년 7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난 '20년 8월, '(가칭)평창 치유·회복연수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22년~'26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투자심사 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나,

- '23년~'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이어 금번 회기에 제출된 '24년~'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는 연수원 건립사업을 반영하지 않았고,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연수원 건립에 대해 작성하지 않은 바,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교육청은 연수원 건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소관부서인 청사이전추진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6년 2월 28일까지 존속되는 한시기구이고, 동 기금의 존속기한이 '25년 12월 31까지인 바, 연수원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여도 동 기금의 존속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와 기금의 제명에는 여전히 “연수원 건립”이 적시되어 있어 현재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연수원 건립에 대해 가부 결정하여 필요시 조례 및 기금명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24〉 기금운용계획중 연수원 건립 추진계획 내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주2)}
입지선정 ^{주1)}	강원도 평창읍 상리 351번지 일원(남산 일원)		'22년 3월	'23년 7월	-
타당성조사용역		'21년 1~5월	'22년 3~8월	'23년 8~12월	-
자체재정투자심사		'21년 7월	'23년 2월	'24년 2월	-
중앙투자심사		'21년 9월	'23년 4월	'24년 4월	-
공유재산심의		'21년 12월	'23년 6월	'24년 6월	-

주1) '20년 기금운용계획중 연수원건립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884

주2) '24년 기금운용계획안중 연수원 건립 사업 미포함